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안 제19조).
-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안 제23조 및 제30조).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함(안 제45조).

Ⅱ. 검토의견

1. 위원회 정수(定數) 증원 삭제(안 부칙 제7조)

-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 또는 소관이 변경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통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정수와 같이 다른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안 부칙 제7조 중 <94> 원자력 진흥법, <18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21> 청년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하여,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또는 소관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수를 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소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을 별도로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증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부칙 제7조 중 <15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상기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¹⁾상 39명의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18명과 위촉직위원 21명이 필수적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구조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어 두 기관의 장이 모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수도 39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위원회 정수는 예외적으로 증원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u><94>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5조제1항 중 “9명 이상 11명 이하”를 “11명 이상 13명 이하”로 한다.</u>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u><94>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삭 제></u>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및 <u>기획예산처장관</u>”으로 한다. <18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10조제3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u>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	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u>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으로 한다. <18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삭 제></u>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

개 정 안	수 정 의 견
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u>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u>”으로 한다. <621>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13조제3항 중 “40명”을 “41명”으로 한다.</u>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	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한다. <619>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삭 제></u>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

개 정 안	수 정 의 견
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u>기획예산처장관</u> ”으로 한다.	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소관 조정 (안 부칙 제7조)

- 안 부칙 제7조 중 일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 등 운영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해제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1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전단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의 발행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491>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이번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소관이 잘못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는 큰 틀에서 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전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전단은 2008년 이전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491>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u><159></u>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u>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u>"으로 한다. <u><491></u>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u>기획예산처장관</u>"으로 한다.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u><159></u>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u>기획예산처장관</u>"으로 한다. <u><488></u>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u>재정경제부장관</u>"으로 한다.

3.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등 누락된 타법 개정사항 규정 및 실효된 타법 개정사항 삭제 (안 부칙 제7조)

- 안 부칙 제7조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또는 소관이 변경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현행 법률뿐만 아니라,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은 법률 중 이번 조직개편사항이 규정된 내용도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누락된 현행 법률 또는 공포 후 시행전 법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누락된 타법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이 외에도, <16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실효된 법률이 안 부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㉔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u><신설></u>	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㉔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u>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2항</u>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16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u> <u>제26조제2항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u> <u>제26조제2항제10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u> <u><2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u> <u><삭 제></u> <u><29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생략)... <u>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u> <u><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u>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신 설></u>	<u>정한다.</u> <u>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u> <u><58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u>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